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411 호 2023. 7. 20.(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44회[공유수면 점·사용 협의사항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145회[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사항 고시]..... 2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006회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008회[행정대집행 영장]..... 1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009회[만 나이 정착과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10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010회[만 나이 정착과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5개 규칙의 일부 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4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012회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수정) 5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021회[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67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144호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완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고시내역

협의 번호	협의자		점용장소	면적 (㎡)	협의기간	점용목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제2023 -7호	울산복구청 문화체육과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복구 산하동 317-5번지 일원	2,900	'23. 07. 17. ~ '23. 08. 09.	울산 서머페스티벌 운영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3 - 14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승인(신고) 고시내역

신고승인 년월일	승인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착공예정 일	준공예정 일	공사내용
		성명	주소					
'23.7.17.	제2023-3호	울산복구청 농수산과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복구 산하동 367-17 번지 일원	350	2023. 7.17.	2023. 7.20.	산하해변 물놀이장 설치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1006호

「울산광역시 복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청년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의 연령을 확대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 연령 명시 및 상향(안 제2조제1호)
: (당초) 「청년기본법」 제3조제1항 → (변경) 19세 이상 ~ 39세 이하
- 나. 위원회의 구성 관련 규정 정비 및 청년정책 관련 부서장 명시 (안 제 8조)
- 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안 제10조의2)
- 라. 우수 청년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안 제23조)

3.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3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9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경제일자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출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6층 경제일자리과

2) 전화번호 : 052)241-7717, 팩스번호 : 052)241-77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령은 개별사업의 성격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 중 “정치·경제·사회·문화”를 각각 “경제·사회·문화”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제8조제4항제4호 중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조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문화, 교육, 복지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포상) 구청장은 청년발전 및 권익 증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청년</u>”의 범위는 「<u>청년기본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u>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u></p> <p>2. “<u>청년정책</u>”이란 <u>정치·경제·사회·문화</u>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p> <p>3. “<u>청년단체</u>”란 <u>정치·경제·사회·문화</u>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4. “<u>청년활동</u>”이란 <u>정치·경제·사회·문화</u>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u>청년</u>”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령은 <u>개별사업의 성격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u></p> <p>2. ----- <u>경제·사회·문화</u>----- ----- -----.</p> <p>3. ----- <u>경제·사회·문화</u> ----- ----- -----.</p> <p>4. ----- <u>경제·사회·문화</u> ----- ----- -----.</p>
<p>제8조(위원회의 구성)</p> <p>① ~ ② (생략)</p> <p>③ 당연직은 <u>청년정책 관련 업무</u></p>	<p>제8조(위원회의 구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삭제></p>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3명 이
내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하되,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따른다.

1. ~ 3. (생 략)

4.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
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신 설>

5. (생 략)

<신 설>

<신 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제2항을 따른다

1. ~ 3. (현행과 같음)

4.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
을 보유한 사람

5. 문화, 교육, 복지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
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
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
다.

제23조(포상) 구청장은 청년발전 및

권익 증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6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경제일자리과 행정7급 김윤경(241-7717)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 1008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미상

귀하

주소: 미상

2023년 5월 16일, 귀하의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구역 내 무단행위에 대해 2023년 5월24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북구청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23년 8월 7 ~ 9일 10시 ~ 17시	건설과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서기	(정)김영달 (부)박진권	필지 별 2,000,000원 이내 (비용 청구 시, 명세 예정)

2023년 7월 19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소 속: 건설과

직위(직급): (정)지방시설주사, (부)지방시설서기

성 명: (정)김영달, (부)박진권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한 경우)

위 사람은 2023년 7월 19일, 행정대집행 영장으로 통보한 담당 행정대집행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2022년 7월 19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행정대집행 대상 필지 조서

구 분	하천명	소재지(지번)	지 목	면 적	불법현황	원인자
지방하천	동천	명촌동 770-3	하천	100m ²	경작	미상
	동천	창평동 1092	하천	30m ²	경작	미상
	동천	시례동 669-2	답	60m ²	경작	미상
소하천	마동천	매곡동 795-173	하천	5,290m ²	경작	미상
	대밭골천	화봉동 1587	하천	2,180m ²	경작	미상
공유수면	-	신천동 745-117	하천	330m ²	경작, 무단 적치	미상
	-	매곡동 산 113-1	하천	1,110m ²	경작	미상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구 분	하천명	소재지(지번)	지 목	불법현황	원인자	소유자
지방하천	동천	명촌동 770-3	하천	경작	미상	국토교통부



위치도



현장사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구 분	하천명	소재지(지번)	지 목	불법현황	원인자	소유자
지방하천	동천	장평동 1092	하천	경작	미상	국토교통부



위치도



현장사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구분	하천명	소재지(지번)	지 목	불법현황	원인자	소유자
지방하천	동천	시례동 669-2	담	경작	미상	국토교통부



위치도



현장사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구분	하천명	소재지(지번)	지 목	불법현황	원인자	소유자
소하천	마동천	매곡동 795-173	하천	경작	미상	국토교통부



위치도



현장사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구 분	하천명	소재지(지번)	지 목	불법현황	원인자	소유자
소하천	대밭골천	화봉동 1587	하천	경작	미상	국토교통부



위치도



현장사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구분	하천명	소재지(지번)	지 목	불법현황	원인자	비 고
공유수면	-	신천동 745-117	하천	경작, 무단 적치	미상	국토교통부



위치도



현장사진

□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구분	하천명	소재지(지번)	지목	불법현황	원인자	비고
공유수면	-	매곡동 산 113-1	하천	정착	미상	국토교통부



위치도



현장사진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1009호

만 나이 정착과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복구 10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개정(시행 2023. 6. 28.)에 따라 만 나이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 도모하고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제정이유

-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개정(시행 2023. 6. 28.)에 따라 만 나이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 도모하고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 삭제(안 제1조 ~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련법령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및 「민법」 제158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출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예산과

2) 전화번호 : 052)241-7131, 팩스번호 : 052)241-7109

3) 전자우편(E-mail) : praise34@korea.kr

6. 기타사항

「만 나이 정착과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10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복구 10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울산광역시 복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복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만 19세이상”을 “19세 이상”으로 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복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3조(「울산광역시 복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복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4조(「울산광역시 복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복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5조(「울산광역시 복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6조(「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세부터 만 12세”를 “6세부터 12세”로 한다.

제7조(「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8조(「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후단 중 “만19세”를 “19세”로 한다.

제9조(「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9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0조(「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① 명예구민 증 수여대상자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u>만 19세이상</u> 북구민의 20명 이상 의 연서</p> <p>② (생략)</p>	<p>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①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19세 이상</u> ----- -----</p> <p>② (현행과 같음)</p>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모집공고일 현재 <u>만 18세</u>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 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 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제7조(위원의 자격) ① ----- -----<u>18세</u>----- ----- -----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2. · 3. (생략)</p>	<p>제2조(정의) ----- ----- -----.</p> <p>1. ----- 65세 ----- ----- ----- -----.</p> <p>2. · 3. (현행과 같음)</p>

울산광역시 복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복구에 거주하는 <u>만 65세</u>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p> <p>2. ~ 6. (생략)</p>	<p>제2조(정의) ----- ----- --.</p> <p>1. ----- ----- <u>65세</u> ----- -----.</p> <p>2. ~ 6. (현행과 같음)</p>

울산광역시 북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돌봄 아동”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u>만 6세부터 만 12세</u>까지의 아동과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p> <p>2. · 3.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 <u>6세부터 12세</u> ----- ----- ----- -----.</p> <p>2. · 3. (현행과 같음)</p>

**울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u>만 18세</u> 미만인 아동을 말한다.</p> <p>2.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 ----- <u>18세</u> ----- -----.</p> <p>2. (현행과 같음)</p>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생 략) ②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국 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 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검 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 8. (생 략) 9.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하는 만 <u>65세</u> 이상인 고혈압·당뇨· 고지혈증 진료환자 중 울산광 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진료건당 30일 이내 처방받은 환자에 한해 투약 1 일 진료수가를 적용	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 <u>65세</u> ----- ----- ----- ----- -----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u>만 60세</u> 이상의 구민 2. · 3. (생략)	제5조(지원 대상) ----- ----- ----- ----- -----. 1. <u>60세</u> ----- 2. · 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7.]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1010호

만 나이 정착과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복구 5개 규칙의 일부 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개정(시행 2023. 6. 28.)에 따라 만 나이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 도모하고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제정이유

-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개정(시행 2023. 6. 28.)에 따라 만 나이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 도모하고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 삭제(안 제1조 ~ 제5조)

3. 규칙안 : 따로 붙임

4. 관련법령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및 「민법」 제158조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라. 제출처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예산과

2) 전화번호 : 052)241-7131, 팩스번호 : 052)241-7109

3) 전자우편(E-mail) : praise34@korea.kr

6. 기타사항

「만 나이 정착과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5개 규칙의 일부 개정 에 관한 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복구 5개 규칙의 일부
개정에 관한 규칙안

제1조(「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만 7세”를 “7세”로 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복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복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아동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 중 “만 14세”를 각각 “14세”로 한다.

제3조(「울산광역시 복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복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9세”를 각각 “19세”로 한다.

제4조(「울산광역시 복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복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9세”를 각각 “19세”로 한다.

제5조(「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만 14세”를 각각 “14세”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만 14세”를 각각 “14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비상근무 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u>만 7세</u> 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p>	<p>제21조(비상근무 제외자)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7세</u> ----- -----</p>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자 택: 휴 대 폰:
	단체명	연 락 처	
	주 소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자 택: 휴 대 폰:
	단체명	연 락 처	
	주 소		

사용목적(행사명)	
사 용 시 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1. 냉난방 2. 빔 프로젝터 3. 기타(,)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참가에정인원	일 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 계 명

사용목적(행사명)	
사 용 시 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1. 냉난방 2. 빔 프로젝터 3. 기타(,)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참가에정인원	일 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 계 명

※ 시설 사용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시설 사용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	1년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보주체가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인 성명: (서명)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본인 성명: (서명)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년 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청자	성명		연락처	자택 :
	주소			휴대폰 :
사용일시			사용장소	
납부한 사용료	금	원	사용료 납부일	
	(₩)		
계좌입금 통장	거래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반환신청 사유				
※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인	성명:	(서명)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청자	성명		연락처	자택 :
	주소			휴대폰 :
사용일시			사용장소	
납부한 사용료	금	원	사용료 납부일	
	(₩)		
계좌입금 통장	거래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반환신청 사유				
※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안내사항 통보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정보주체가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인	성명:	(서명)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u>만 19세</u>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u>만 19세</u>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p> <p>2.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 <u>19세</u> ----- <u>19세</u>----- -----.</p> <p>2. (현행과 같음)</p>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청소년"이라 함은 <u>만 19세</u>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u>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u>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p> <p>2. (생략)</p>	<p>제2조(정의) ----- ----- --.</p> <p>1. ----- <u>19세</u> ----- <u>19세</u>----- -----.</p> <p>2. (현행과 같음)</p>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1호서식 앞면]</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문화예술회관 회원 가입 신청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결</td> <td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담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부서장</td> </tr> <tr> <td colspan="4"> (√표시)회원종류 <input type="checkbox"/>일반 <input type="checkbox"/>부부 <input type="checkbox"/>가족 <input type="checkbox"/>학생 <input type="checkbox"/>단체 회비금액 : </td> <td style="text-align: center;">재</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개인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 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년월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 별</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남 <input type="checkbox"/>여</td> </tr> <tr> <td colspan="7">주 소</td> </tr> <tr> <td colspan="7">집 전 화</td> </tr> <tr> <td colspan="3">휴대전화</td> <td colspan="5"> ※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input type="checkbox"/>동의함 <input type="checkbox"/>동의안함 </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단체회원</td> <td colspan="2">단 체 명</td> <td colspan="2">대 표 자</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2">회 원 수</td> <td colspan="5">단체주소</td> </tr> <tr> <td colspan="7">집 전 화</td> </tr> <tr> <td colspan="3">휴대전화</td> <td colspan="5"> ※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input type="checkbox"/>동의함 <input type="checkbox"/>동의안함 </td> </tr> </table> <p>※ 만14세 미만 아동은 아래의 법정대리인 항목을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법 정 대리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 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와의 관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락처(휴대전화)</td> </tr> <tr> <td> </td> <td> </td> <td> </td> </tr> </table> <p>본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p> <p style="text-align: center;">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p>	문화예술회관 회원 가입 신청서				결	담당자	담당	부서장	(√표시)회원종류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부부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단체 회비금액 :				재				개인회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 소							집 전 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단체회원	단 체 명		대 표 자					회 원 수		단체주소					집 전 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법 정 대리인	성 명	신청자와의 관계	연락처(휴대전화)				<p>[별지 제1호서식 앞면]</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문화예술회관 회원 가입 신청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결</td> <td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담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부서장</td> </tr> <tr> <td colspan="4"> (√표시)회원종류 <input type="checkbox"/>일반 <input type="checkbox"/>부부 <input type="checkbox"/>가족 <input type="checkbox"/>학생 <input type="checkbox"/>단체 회비금액 : </td> <td style="text-align: center;">재</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개인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 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년월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 별</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남 <input type="checkbox"/>여</td> </tr> <tr> <td colspan="7">주 소</td> </tr> <tr> <td colspan="7">집 전 화</td> </tr> <tr> <td colspan="3">휴대전화</td> <td colspan="5"> ※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input type="checkbox"/>동의함 <input type="checkbox"/>동의안함 </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단체회원</td> <td colspan="2">단 체 명</td> <td colspan="2">대 표 자</td> <td colspan="3"></td> </tr> <tr> <td colspan="2">회 원 수</td> <td colspan="5">단체주소</td> </tr> <tr> <td colspan="7">집 전 화</td> </tr> <tr> <td colspan="3">휴대전화</td> <td colspan="5"> ※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input type="checkbox"/>동의함 <input type="checkbox"/>동의안함 </td> </tr> </table> <p>※ 14세 미만 아동은 아래의 법정대리인 항목을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법 정 대리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 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와의 관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락처(휴대전화)</td> </tr> <tr> <td> </td> <td> </td> <td> </td> </tr> </table> <p>본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p> <p style="text-align: center;">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p>	문화예술회관 회원 가입 신청서				결	담당자	담당	부서장	(√표시)회원종류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부부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단체 회비금액 :				재				개인회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 소							집 전 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단체회원	단 체 명		대 표 자					회 원 수		단체주소					집 전 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법 정 대리인	성 명	신청자와의 관계	연락처(휴대전화)			
문화예술회관 회원 가입 신청서				결	담당자	담당	부서장																																																																																																																																																																
(√표시)회원종류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부부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단체 회비금액 :				재																																																																																																																																																																			
개인회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 소																																																																																																																																																																						
	집 전 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단체회원	단 체 명		대 표 자																																																																																																																																																																				
	회 원 수		단체주소																																																																																																																																																																				
	집 전 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법 정 대리인	성 명	신청자와의 관계	연락처(휴대전화)																																																																																																																																																																				
문화예술회관 회원 가입 신청서				결	담당자	담당	부서장																																																																																																																																																																
(√표시)회원종류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부부 <input type="checkbox"/> 가족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단체 회비금액 :				재																																																																																																																																																																			
개인회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주 소																																																																																																																																																																						
	집 전 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단체회원	단 체 명		대 표 자																																																																																																																																																																				
	회 원 수		단체주소																																																																																																																																																																				
	집 전 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법 정 대리인	성 명	신청자와의 관계	연락처(휴대전화)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1호서식 뒷면)</p> <h3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h3> <p>■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비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 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 강좌 등 행사관련 정보 제공 -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등 수집하려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단체명, 회원수, 단체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문서파기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문화예술회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p>■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p>본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p> <p>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p>	<p>(별지 제1호서식 뒷면)</p> <h3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h3> <p>■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비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 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 강좌 등 행사관련 정보 제공 -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등 수집하려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단체명, 회원수, 단체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문서파기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문화예술회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p>■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p>본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p> <p>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p>

현 행	개 정 안
<p>(별지 제9호서식 뒷면)</p> <h3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h3> <p>■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비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 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 강좌 등 행사관련 정보 제공 -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등 수집하려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단체명, 회원수, 단체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문서파기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문화예술회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p>■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만 14세</u>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p>본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u>만 14세</u>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p> <p>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p>	<p>(별지 제9호서식 뒷면)</p> <h3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h3> <p>■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비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 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 강좌 등 행사관련 정보 제공 -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등 수집하려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단체명, 회원수, 단체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문서파기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문화예술회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p>■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4세</u>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p>본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u>14세</u>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p> <p>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p>

관계법령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7.]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23 - 1012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수정)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1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 제34조가 개정(2023.3.28.)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나. 과태료 부과 기준 명확화(안 별표)

3. 관계법령

가. 「지역보건법」 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34조

나. 「의료법」 제27조, 제33조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8월 7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1)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 전화 : 052)241-8112, 팩스 : 052)241-8109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의견서 : 하단 참조

6. 기타사항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3 - 101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로 한다.

제2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을 “「지역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나.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종전 처분일과 위반사항을 재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조항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1항	600	1,200	3,000
2.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호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3.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호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4. 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니면서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34조----- -----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제1항 및 제2항-----.

현 행

개 정 안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종전 처분일과 위반사항을 재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근거조항	과태료금액(만원)		
		1차	2차	3차
<신 설>	<신 설>	<신 설>		
1.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지역보건법 제23조, 제34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200	300	300
2.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지역보건법 제23조, 제34조 제1항제2호	경고	100	200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3.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각각 보건소·보건의료원 또 보건지소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29조, 제34조 제1항제2호	300	300	300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종전 처분일과 위반사항을 재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근거조항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과기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1항	600	1,200	3,000
2.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3.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4. 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니면서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 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③ ~ ⑤ (생략)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 ⑩ (생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3 - 1021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시행 '23. 6. 11.)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지명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
- 지명위원회 구성사항 변경(안 제3조1항 및 제2항)
- 지명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추가(안 제5조제2항)
- 지명위원회 서면심의 사유 신설(안 제7조제3항)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제4조)

3. 개 정 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9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민원지적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1) 전자우편 : sngddrn@korea.kr
- 2) 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민원지적과
- 3) 팩 스 : 052-241-756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8조”를 “제88조의2”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결정”을 “심의·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또는 조정”을 각각 “및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구청장”을 “지명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사람 중 3명 이상”을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각각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기 및 위원의 해촉)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를 회신과 서면심의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u>제88조</u>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제88조의2</u>----- ----- -----.</p>
<p>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결정</u>한다.</p>	<p>제 2 조 (기 능) ----- 심 의 · 의결-----.</p>
<p>1. 지명의 제정 · 변경 또는 <u>조정</u></p> <p>2. · 3. (생략)</p>	<p>1. ----- 및 폐지에 관한 <u>사항</u></p> <p>2. · 3.(현행과 같음)</p>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제3조(구성) ① ----- ----- <u>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u></p>
<p>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u>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u></p>	<p>② ----- <u>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u></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③ -----.</p>
<p>1.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제4조(위원장 직무 등) ① (생략)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정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임기 및 위촉 해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 사 랫

제4조(위원장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③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제5조(임기 및 위원의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

제7조(회의) ①·② (생략)

<신설>

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회 회신과 서면심의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

제88조의2(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제93조(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

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